

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

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 목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유의사항 안내(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 증여 불가 관련)

1.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앙센터-2019-684호(2019.4.4.)와 관련하여 화장품법,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무상 증여가 위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3. 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시 유의하여 주시고, 관련 사항을 관내 수요처 및 단체 등에 안내바랍니다.

가.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(향초 및 기피제 등)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
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무상 증여 불가

제35조(판매 등의 금지)

-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,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
 - 가.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
 - 나. 제10조제1항·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 - 다.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 - 라.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
 - 가.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
 - 나.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 제품
 - 다.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
 3.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
-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 하는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,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화장품(손세정제, 립밤 등)의 무상 증여 불가의 건

- 「화장품법」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‘화장품제조업’,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‘화장품책임판매업’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, 무상 증여 또한 유통으로 판단하여 ‘화장품책임판매업자’를 등록하여야 함.
- 화장품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나, 강사 및 교육생 본인이 제작한 물품을 주변에 증여하는 행위는 불가함.

제3조(영업의 등록)

-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2. 3., 2018. 3. 13.>
-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13.>
-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(이하 "책임 판매관리자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13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3. 13.>

다. 참고사항

- 고체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2019.12.31.자로 화장품으로 분류
- 기존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·승인을 받은 제품(원료)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각 해당 법률에 적용받음.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되는 활동은 환경부, 「화장품법」에 적용되는 활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및 위법여부 확인 바람.

- 붙임 1. (공문_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)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유의사항 안내 1부.
 2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1) 1부.
 3. 살생물제 품유형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) 1부.
 4.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(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) 1부.

끝.

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

수신자 서구 1-25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팀장 | 한도현 | 부장 | 박미혜 | 사무국장 | 김의욱 |
| 협조자 | | | | | |
| 시행 | 조직지원부-740 (2019.4.11.) | | | 접수 | |
| 우 |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, 3층 | | | http://volunteer.seoul.go.kr | |
| 전화 | 02-2136-8751 | FAX | 02-2136-8702 | honey3569@volunteer.seoul.kr | 공개 |

04/11